

제 9 장 분쟁해결

제 9.1 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의 제4.21조 및 부속서 I의 제25조에 규정된 방식을 고려하여, 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상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분쟁은 제소 당사국이 선택하는 분쟁해결 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 선택된 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의 패널설치 요청이 있을 때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4. 당사국이 이 협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상에서 발생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의도를 모든 당사국들에게 통지한다.

5. 제9.4조 내지 제9.10조에 규정된 중재 규칙은 제2.7조·제2.9조·제2.10조 및 제5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9.2 조 주선·조정 또는 중개

1. 주선·조정 및 중개는 관련된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채택되는 절차이다. 그 절차는 언제든지 개시되고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주선·조정 및 중개를 포함하는 절차는 비공개로 하며, 그 밖의 절차에서 당사국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9.3 조 협 의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다한다.

2. 당사국이 요청의 대상이 된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 의하여 적용된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거나, 이 협정상 자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이 그러한 조치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무효화 된다고 간주하는 때에는 언제나, 하나 이상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또는 그 반대로 대한민국이 하나 이상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협의요청을 하거나 접수하는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개최된다.

3. 협의는 협의요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부패 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사안을 포함하여, 긴급한 사안에 대한 협의는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시된다.

4. 협의에 관련된 당사국들은 그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과정에서 교환된 비공개 또는 독점적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한다.

5. 협의는 비공개로 하며 후속적인 절차에 관련된 당사국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6. 협의에 관련된 당사국들은 사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해결방안을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제 9.4 조

중재패널의 설치

1. 사안이 협의요청 접수일 후 60일 이내 또는 긴급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안은 하나 이상의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피소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게 제출되는 서면요청의 방식으로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의 사본은 각 당사국이 그 분쟁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들에게도 전달된다.

2. 2개 이상의 당사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하여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들 제소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단일 중재패널이 설치되어야 한다.¹⁾

3. 중재요청은 문제가 된 조치의 확인과 제소의 법적 기반에 대한 표시를 포함한 제소의 사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5 조

중재패널

1. 제9.4조에 규정된 중재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각 분쟁당사국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1인의 중재패널 위원을 임명한다.

3. 분쟁당사국들은 두 번째 위원의 임명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 번째 위원의 임명에 합의한다. 이렇게 임명된 위원은 중재패널의 의장이 된다.

4. 제9.4조에 규정된 요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3인의 위원 모두가 지정되거나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 30일 이내에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이 필요한 지정을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중재패널 위원들이 특정된 기간 이내에 지정되지 아니할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1) 다음에서 “분쟁당사국”, “제소당사국” 및 “피소당사국” 용어는 둘 이상의 당사국이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사용된다.

다음 1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4인의 지명자로 구성된 명단을 교환한다. 패널 위원은 각 당사국의 명단의 교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명단으로부터 추첨으로 임명된다. 분쟁당사국이 4인의 지명자의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패널 위원은 다른 분쟁당사국이 이미 제출한 명단으로부터 추첨으로 임명된다.

5. 중재패널의 의장은 어느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되고, 통상 거주지를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 두지 못하며,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 현재 고용 중이거나 과거에 고용된 적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그 어떤 자격으로서도 그 사건을 다룬 적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6.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경우, 후임자는 원 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선정절차에 따라 15일 이내에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은 원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날에 시작하여 후임자가 선정된 날을 끝으로 하는 기간동안 정지된다.

7. 중재패널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법률, 국제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 또는 국제무역협정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위원은 객관성, 신뢰성, 건전한 판단 및 독립성에 엄격하게 기초하여 선정되며, 중재절차의 기간 동안 이들 특성에 따라 행동한다. 분쟁당사국이 위원이 위에 명시된 기초를 위반한 것으로 믿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협의하고, 그들이 합의하는 경우, 그 위원은 해임되고 새로운 위원이 이 조에 따라 그리고 제6항에서 규정된 절차를 밟아 임명된다.

8.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의장이 임명된 날로 한다.

제 9.6 조 중재패널의 절차

1.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절차는 공동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채택될 모범절차규칙에 따라 수행된다. 그러한 규칙을 채택

할 때까지는,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적으로 절차를 규율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중재패널의 모든 절차의 진행상 절차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분쟁당사국들은 중재패널에서 최소한 한 번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최초 및 반박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나. 분쟁당사국들은 중재패널에 의하여 열리는 모든 심리에 초청된다.

다. 중재패널에 제출되는 모든 서면입장 및 의견들은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분쟁당사국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라. 심리, 심의, 최초 보고서, 그리고 중재패널에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및 중재패널과의 의사소통은 비공개로 한다.

3. 중재패널설치 요청의 전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탁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9.4조에 따라 중재패널설치 요청서에 언급된 사안을 검토하고, 그 사유를 포함한 법률 및 사실을 조사하고, 그리고 만약 있을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한다.”

4. 분쟁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전문가로부터 과학적 정보 및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5. 중재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의 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는 이 협정의 규정에 기초하여 판정한다.

6. 중재패널의 결정은 위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내려진다. 위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중재패널은 어느 위원이 다수 또는 소수 의견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공개할 수 없다.

7. 중재패널 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패널의 비용은 분쟁당사국들이 동일한 몫으로 부담한다.

제 9.7 조 제소의 철회

제소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발행되기 이전 언제든지 자국의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철회는 추후 동일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제소를 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9.8 조 최초 보고서

1.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의 서면입장 및 주장과 제9.6조제4항에 따라 얻어진 과학적 정보 및 기술적 조언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3. 분쟁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최초 보고서에 관한 서면 의견을 중재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4. 그러한 경우, 그리고 그 서면 의견을 검토한 후, 중재패널은 자체 발의 또는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국의 견해 요청

나. 최초 보고서 재검토. 그리고/또는

다. 중재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추가적인 조사

제 9.9 조 최종 보고서

1. 중재패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별도 의견을 포함하여, 제9.8조제2항에 규정된 사안을 담고 있는 최종 보고서를, 최초 보고서의 제출

일의 3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한다.

2.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 보고서는 당사국들에게 제출된 지 15일 후에 공개된다.

제 9.10 조

중재패널 보고서의 이행

1. 최종 보고서는 분쟁당사국들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기속력을 가진다. 각 분쟁당사국은 최종 보고서 이행에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때, 분쟁당사국들은 다음에 대하여 합의한다.

가. 중재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쟁해결 수단. 그리고

나. 분쟁해결 수단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국은 원 중재패널이 그 사건의 특별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결정은 그 요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3. 최종 보고서에서 중재패널이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의 조치가 무효화 또는 침해될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분쟁해결 수단은, 언제든지 가능한 때, 그 불합치 또는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분쟁당사국들이 최종 보고서의 발행 후 30일 이내에 제2항가호에 따라 분쟁해결 수단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분쟁해결 수단에 대하여는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제2항나호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그 수단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그러한 요청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이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는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혜택과 동등한 만큼 이 협정상 부여된 혜택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정지되어질 혜택을 검토함에 있어,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이 이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의 정지를 우선 추구하여야 한다. 제소 당사국이 그러한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시키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 밖의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시킬 수 있다.

6. 제소 당사국은 혜택 정지가 발효될 예정인 날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정지시키고자 하는 혜택이 이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정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혜택과 동등한 것인지, 그리고 제안된 정지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원 중재패널이 판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판정은 그 요청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내려진다. 중재패널이 판정을 하기 전까지 혜택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7.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이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정된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철회되거나 수정될 때까지, 또는 분쟁당사국들이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만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된다.

8.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원 중재패널은 혜택의 정지 이후 채택된 이행조치가 최종 보고서에 합치되는지를 판정하고, 그러한 판정에 비추어, 혜택의 정지가 종료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판정한다. 중재패널의 판정은 그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9. 제2항나호·제6항 및 제8항에 규정된 판정은 구속력이 있다.

제 9.11 조 그 밖의 규정

이 장에서 언급된 기간은 언제라도 관련 당사국들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
될 수 있다.

진품 증명서

1. 수출자(성명 및 주소)	<p style="text-align: center;">아래 명시된 치즈 증명서</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HS 품목분류체계에 의한 코드번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일련번호 진품</p>
2. 수하인(성명 및 주소)	3. 위임기관
주석	4. 송장 번호 및 발행일자
5. 화인과 수량-번호와 포장종류	6. 총 중량(kg)
	7. 순 중량(kg)
<p>8. 위임기관 사증</p> <p>위에 언급된 송장은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I의 부록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명시된 스위스 치즈를 포함함을 증명한다.</p> <p>발행장소 및 발행일자 : 서명: 위임기관 직인(인장):</p>	
9. 대한민국 세관당국용	